

2021년 2-F차 평생교육실습 안내문

▶ 강의 세부 일정 및 서류 제출 일정 ◀

▣ 전체 일정

수강기간	2021년 9월 11일(개강) ~ 12월 24일(종강)	온라인 강의 + 출석수업 + 현장실습
실습 가능 기간	2021년 9월 13일(월) ~ 12월 3일(금)	기간 내 <u>최소 4주, 총 160시간 이상</u> (실습규정 준수)

▣ 출석수업 날짜

개강 OT	2021년 9월 11일(토) 10:00 ~ 13:00	※ 주의 : ZOOM 온라인 화상수업으로 진행 (불참 시 이수 불가)
종결 평가회	2021년 12월 18일(토) 10:00 ~ 13:00	

▣ 서류 제출 안내

1차 서류		
실습 시작 3일 전까지 (평일기준) 반드시 보내주세요. (필히 원본 등기 발송) [현장 접수 불가]	1. 평생교육 실습 의뢰서 및 실습 시간표	[학생] 본 교육원 양식에 실습생 이 작성 ※ 공문 발송을 위해 실습기관 Fax 번호 또는 담당자 E-mail 주소를 반드시 작성 바랍니다.
	2. 실습생 프로파일 (3x4 사진)	
	3. 평생교육 실습생 서약서	
	4. 성적증명서	[학생] 실습 전 선 이수과목(필수4과목 확인) 평생교육론, 평생교육방법론, 평생교육경영론,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
	5. 평생교육시설 신고증 사본	[기관] 실습기관의 유형 및 예시 참조
	6. 실습지도자 자격증사본	[기관] 실습지도자 자격기준 : 2급 - 2년 경력 3급 - 3년 경력
	7. 실습의뢰 결과 회보서	[기관] 실습기관으로 공문이 발송된 후 실습기관에서 Kstudy한국원격평생교육원으로 실습 시작일 전까지 회보서를 반드시 발송해야 함

2차 서류

<p>※ 9, 10번 서류 제외 하고, 번호 순서대로 책 제본(원본)으로 제출합니다.</p> <p>2021년 12월 10일(금)까지 (기한 엄수 요망)</p> <p>[현장 접수 불가]</p>	1. 실습지도 계획서	[기관] 본 교육원 양식에 실습기관 이 작성
	2. 실습생 출근부	[학생] 본 교육원 양식에 실습생 이 작성 ※ 실습활동사진은 전체 일정 중 2장 이상 사진은 실습일지 내용에 부착하지 마시고, 별지를 만들어 준비 (사진은 인화 or 프린트 모두 가능) ※ 서명 또는 도장 날인 반드시 확인
	3. 실습일지(실습활동사진 2매 이상)	
	4. 실습 중간평가서	
	5. 실습기관 분석 보고서	
	6. 실습생 자기평가서	
	7. 실습지도 기록서	[기관] 본 교육원 양식에 실습기관 이 작성 ※ 9, 10번 서류는 실습기관의 서명 또는 도장 날인을 받아 실습기관이나 실습생이 Kstudy한국원격평생교육원에 직접 발송
	8. 실습생 평가서	
	9.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2부★	
	10. 평생교육 현장실습 확인서 2부★	

※ 주의 : 작성 오류 및 서류 미비로 확인될 경우 내용 보안을 위해 추가 서류를 재발송 해야 합니다. 상기 서류를 재차 확인하여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■ 서류 양식 다운로드 방법

- Kstudy한국원격평생교육원 홈페이지 - 실습지원 - 실습지원센터 - 실습자료실(평생교육실습) 접속
- 실습지원센터(<http://welfare.kstudy.co.kr/>) - 실습자료실(평생교육실습) 접속

■ 서류 제출 방법

- 우편번호 : 03129
- 주소 :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31길 36 위너스빌딩 3층 Kstudy한국원격평생교육원 평생교육실습 담당자 앞
- ※ 주의 : 모든 서류(원본)는 우편(등기) 발송을 원칙으로 함(제출 기한 준수) **현장 접수 불가**

■ 성적확인 및 학점인정 신청 일정

성적확인	2021년 12월 30일 목요일 AM 10시 이후 확인 가능	Kstudy한국원격평생교육원 www.kstudy.co.kr
학점인정 신청	2022년 1월에 학점인정 신청 가능 ※ 종결평가회(12/18)에서 안내 예정	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www.cb.or.kr
자격증 신청	2022년 1월에 자격증 신청 가능 ※ 종결평가회(12/18)에서 안내 예정	Kstudy한국원격평생교육원 www.kstudy.co.kr

■ 현장실습비

- 실습기관의 부과기준에 의거 납부가 필요한 경우 실습생이 별도 부담
- ※ 주의 : 평생교육실습 과목 수강료에 현장실습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

평생교육실습 시 주의사항

평생교육실습과목 수강 자격	평생교육론, 평생교육경영론, 평생교육방법론, 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수강이 완료된 학습자
현장실습 이수요건	개강 OT(오리엔테이션)를 이수한 학습자에 한하여 현장실습을 실시

※ 주의 : OT(오리엔테이션) 이전에 실시 한 실습시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(실습 가능 기간 참고)

■ 실습일정 및 실습시간

- 최소 4주간(최소 20일), 총 160시간 이상 현장실습 실시** → 평생교육법 시행규칙[별표1] 준용
- 최소 3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 실습만 가능
- 현장실습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일반적으로 1일 8시간(09:00~18:00), 주 5회(월~금)의 통상근로시간 내 진행하여야 하나 실습기관의 특성 및 실습 상황(직장인 등)을 고려하여 야간 및 휴일 실습도 가능(실습 가능 시간은 09:00 ~ 22:00 까지 인정)
- ※ **실습이 진행되는 동안 실습지도자가 반드시 근무하고 있어야 함**
- 점심(12:00~13:00) 및 저녁(18:00~19:00) 식사시간은 총 160시간의 실습시간에서 제외
- ※ 식사시간(12시, 18시)부터 시작하는 실습은 불가함
- 실습 중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지도교수 및 본 교육원에 미리 연락하여야 함
- 일정 및 실습시간은 실습 시간표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

■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 자격 요건

- 실습기관 자격 요건(실습기관의 유형 및 예시 참조)
 - 「평생교육법」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관
 - 평생교육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기관
 - 실습생의 현장교육 및 실습지도가 가능한 기관
- 실습지도자 자격 요건
 - 평생교육사 1급 자격증 소지자
 - 평생교육사 2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 업무를 2년 이상 종사한 자
 - 평생교육사 3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종사한 자
- 실습지도자는 실습기관의 상근 근로자로 평생교육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평생교육사여야 한다.
- 실습기관 정보
 - 평생교육사 자격관리센터(<https://lledu.nile.or.kr/>) - 실습기관정보 - 실습생 모집 접속

■ 평생교육실습과목 출석 수업 2회(OT/종결 평가회) 및 온라인 강의 1~7주차 수강

- 개강 OT(오리엔테이션)와 종결 평가회 수업은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, 불참 시 이수 불가
- ※ 주의 : 실습이 완료되었어도 종결 평가회 불참 시 이수 불가
- 온라인 강의(1~7주차)는 실습기관에서 실습 진행 중에 이수하지 않도록 함
- 온라인 강의 전체 출석률이 80% 미만일 경우 실습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출석률 과락으로 인하여 이수 불가
- ※ 주의 : 학습자 부주의로 온라인 강의 출석률이 80% 미만일 경우 본 교육원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
■ 현장실습 인정범위

- 평생교육기관 종사자가 근무지(재직기관)에서 실습하는 경우에는 통상 근로시간 내 현장실습은 인정되지 않으며, 통상근로시간 외에 별도로 현장실습의 목적에 맞는 내용의 실습을 실시
 - ※ 근무시간 내 실습 진행 시 자신의 업무 수행 내용이 그대로 현장실습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, 근무시간과 실습시간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
-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현장실습으로 인정 불가
 - 외국 소재 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
 - 2개 이상의 기관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는 경우
 - 근무지에서 통상근로시간 내에서 현장실습을 하는 경우
 - 평생교육사 자격증 외의 다른 자격 취득을 위한 현장실습과 중복하는 경우
 - 직장(현장) 체험 / 사회봉사 등 단기 체험활동 또는 인턴(단기 근로자 형태)을 수행하는 경우

■ 서류 제출 유의사항

1차 서류	모든 서류(원본)는 우편(등기) 발송을 원칙으로 함(현장 접수 불가)
	모든 서식에 자필 서명 또는 도장이 없는 것은 무효 처리
	본인 실습 시작 3일 전까지(평일 기준) 본 교육원에 도착할 수 있도록 발송하여야 함
	본 교육원에서 실습기관에 공문이 발송된 이후부터 실습 진행한 경우에만 실습시간 인정 ※ 주의 : 서류 미비 상태로 실습 진행 시 실습 인정 불가

2차 서류	모든 서류(원본)는 우편(등기) 발송을 원칙으로 함(현장 접수 불가)
	모든 서식에 자필 서명 또는 도장이 없는 것은 무효 처리
	실습이 종료된 후 2차 서류를 목차 순으로 본드 제본하여 본 교육원에 등기 발송합니다. ※ 주의 : 스프링 제본 불가
	[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]와 [평생교육 현장실습 확인서]의 실습 기간, 점수 부분은 테이프를 붙인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. ※ 주의 : 본 서식이 잘못될 경우 자격증 취득이 불가능하므로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u>2차 서류 제출기한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점 처리 (12/10(금)까지 본 교육원에 도착)</u>

기타	1차 및 2차 서류 접수 후 오류가 발견되면 해당 실습생에게 개별 연락을 드리나, 정상 처리된 실습생에게는 별도의 연락을 드리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.
-----------	--

※ 주의 : 작성 오류 및 서류 미비로 확인될 경우 내용 보안을 위해 추가 서류를 재발송 해야 합니다.
 상기 서류를 재차 확인하여 누락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■ 평생교육실습 과목 성적 비율

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(실습기관이 실습생 평가)	출석수업(2회) 및 온라인 강의(1~7주차)	실습 일지 및 발표 (지도교수가 실습생 평가)	총점
50%	출석수업 - 3% (OT 2%+종결 1%) + 온라인 강의 - 7% = 10%	40%	100%

[첨부1] 평생교육실습 운영 개요

양성기관(K) = Kstudy한국원격평생교육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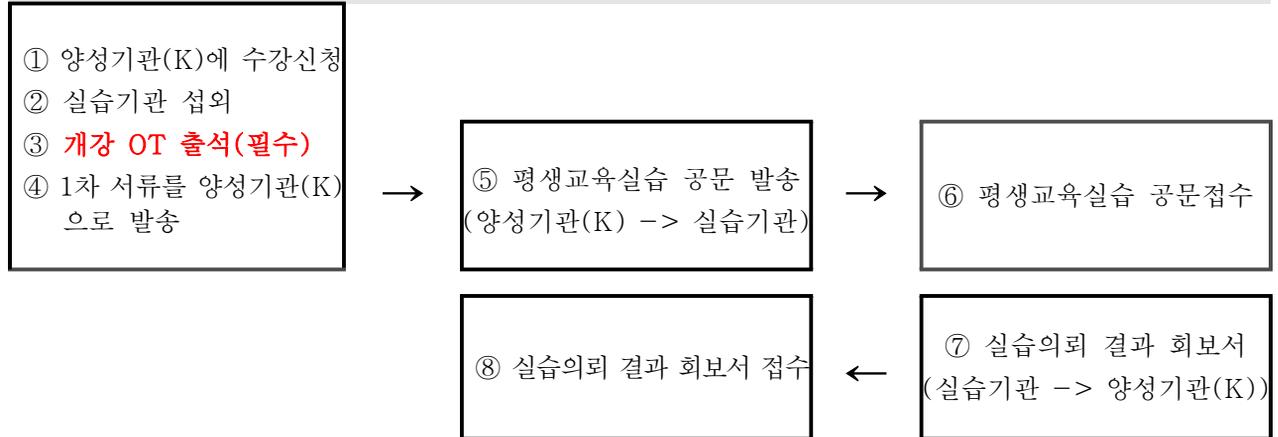
평생교육실습 운영 개요

실습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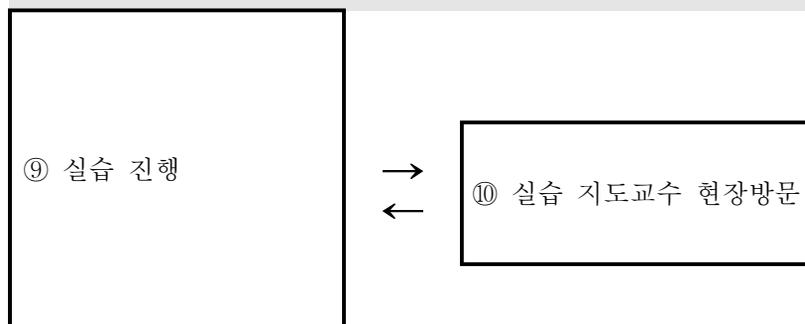
양성기관(K)

실습기관(평생교육시설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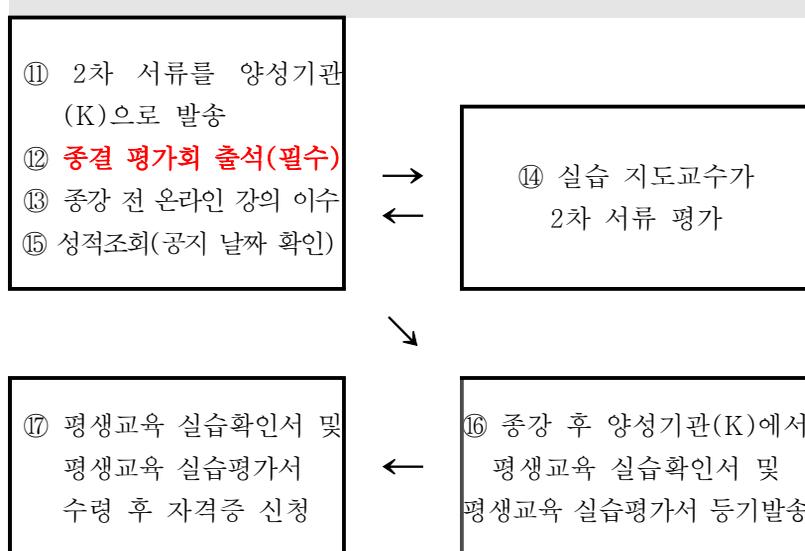
평생교육실습 시작 (전)



평생교육실습 진행 (중)



평생교육실습 종료 (후)



[첨부2] 실습기관의 유형 및 예시

구분	기관유형		예시	
평생교육법	①유형	국가평생교육진흥원	국가평생교육진흥원	
		시·도평생교육진흥원	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, 경상북도평생교육진흥원, 대구평생교육진흥원,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, 전라남도평생교육진흥원,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, 광주평생교육진흥원, 인천평생교육진흥원, 울산평생교육진흥원, 대전평생교육진흥원, 부산평생교육진흥원, 제주특별자치도평생교육진흥원, 충청남도평생교육진흥원, 충청북도평생교육진흥원	
		시·군·구평생학습관	평생학습관, 공공도서관, 문화원, 연수원·수련원, 박물관, 복지관 등 (교육청으로부터 시·군·구평생학습관으로 지정받은 기간에 한함)	
	②유형	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지정기관	문자해득교육프로그램 설치·지정 기관	
		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선정기관	당해연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선정 기관	
	③유형	평생학습도시	시·군·구 평생학습센터 또는 평생교육 전담부서 등	
		국가·지자체 평생학습 추진기구	광역시도청/시·군구청/시도교육청/지역교육청 내 평생학습센터 또는 평생교육 업무담당 부서 등	
	④유형	평생교육 관련사업 수행학교	대학평생교육활성화지원사업, 학교평생교육사업(지역과 함께하는 학교사업, 방과후학교 사업 등) 수행	
	⑤유형	평생교육시설 신고·인가 기관	유·초중등·대학부설/ 학교형태/ 사내대학형태/ 원격대학형태/ 사업장부설/ 시민사회단체부설/ 언론기관부설/ 지식·인력개발 관련 평생교육시설	
	그 밖의 다른 법령	⑥유형	평생직업교육학원	학원설립운영등록증 상 평생직업교육학원 형태 등록 여부 확인 (학교교과교육학원 형태는 인정 불가)
⑦유형		기관형 교육기관	주민자치기관	시·군·구민회관, 주민자치센터 등
			문화시설기관	도서관, 박물관, 미술관, 과학관, 지방문화원 등
			아동관련시설	아동직업훈련시설, 아동복지관, 지역아동(정보)센터 등
			여성관련시설	여성인력개발센터, 여성(복지, 문화)회관 등
			청소년관련시설	청소년지원센터, 청소년수련시설, 청소년문화의집 등
			노인관련시설	노인교실, 노인복지(회)관 등
			장애인관련시설	장애유형별 생활시설, 장애인복지관 등
			다문화가족관련시설	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
			사회복지시설	종합사회복지관 등
⑧유형		훈련·연수형 교육기관	직업훈련기관	공공직업훈련시설, 지정직업훈련기관 등
			연수기관	공무원연수기관, 일반연수기관 등
⑨유형		시민사회 단체형 교육기관	비영리민간단체	전국문해·성인기초교육협의회, 한국평생교육학회 등
			비영리 사(재)단법인	한국평생교육사협회, 한국문해교육협회 등
	청소년단체		한국청소년연맹, 청소년단체협의회 등	
	여성단체		여성회, 여성단체협의회 등	
	노인단체		대한노인회, 전국노인평생교육, 단체연합회 등	
	시민단체		NGO, YMCA, YWCA, 환경운동연합 등	
기 타		그 밖의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 및 단체		

※ 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기관의 경우 반드시 해당 설치·운영 법적 근거 및 평생교육 사업 수행 여부 확인